

「2022년 의료관계법규」 정오표(2021.12.21.~2022.02.22. 추가 법 개정 및 오타 수정에 따른)

쪽	개정 前(~2021.12.20.)	추가 법 개정 및 오타 수정 後(2021.12.21.~2022.02.22)	
12	2021.12.20. 현재 최종수정 법률 01.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12.30.</u> 03.응급의료법 시행령 시행일 : <u>2021.01.05.</u>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09.24.</u> 04.감염병예방법 법률호수 : <u>제18507호, 시행일 : 2022.04.20.,</u> 시행령 시행일 : <u>2021.12.14.</u>,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08.13.</u> 09.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 <u>2020.09.12.</u> 10.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01.01.</u> 11.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09.10.</u> 1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07.07.</u> 1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 <u>2021.01.01.</u>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06.30.</u> 17.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06.30.</u> 20.연명의료결정법 법률호수: <u>제17218호, 시행일 : 2020.04.07</u>	2022.02.22. 현재 최종수정 법률 01.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12.31.</u> 03.응급의료법 시행령 시행일 : <u>2021.12.30.,</u>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12.31.</u> 04.감염병예방법 법률호수 : <u>제18603호, 시행일 : 2022.03.22.,</u> 시행령 시행일 : <u>2022.02.09.</u>, 시행규칙 시행일 : <u>2022.02.09.</u> 09.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 <u>2022.01.13.</u> 10.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12.31.</u> 11.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 <u>2022.01.17.</u> 1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일 : <u>2022.01.01.</u> 1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 <u>2022.01.01.</u>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12.31.</u> 17.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 <u>2021.12.31.</u> 20.연명의료결정법 법률호수: <u>제18627호, 시행일 : 2022.03.22</u>	2021. 12.21. ~2022. 02.22 까지 관련법 추가 개정
153	정답 289. ㉓	정답 289. ㉔	오타 수정
197	35번 문제 <해설>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심사평가원장은 ~~~~~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u>12월의 범위내</u>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5번 문제 <해설>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심사평가원장은 ~~~~~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u>48개월의 범위</u>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1. 12.28 관련법 추가 개정
213	정답 68. ㉑	정답 68. ㉒	오타 수정
274	85. 아래 내용은~ ㉓ 「약사법」에 따른 약국	85. 아래 내용은~ ㉓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소	오타 수정
307	148. ~~ ㉔ 피해조사반은 <u>시·도지사</u>가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8. ~~ ㉔ 피해조사반은 <u>시장·군수·구청장</u>이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오타 수정

318	167번 문제 <해설> [별표 4의2] 음압병실 설치·운영 기준(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개정 2020.9.11.> 1. 설치기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상 :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나. 전실 :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라. 음압용 공급·배출 시설 : 다른 공급·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HEPA 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마.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바.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167번 문제 <해설> [별표 4의2] 음압병실 설치·운영 기준(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개정 2022.1.28.> 1. 설치기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상 1) 음압병동의 음압병상 : 1인실은 10㎡, 다인실은 음압병상마다 6.3㎡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다인실은 음압병상 간 간격이 1.5m 이상이고,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그 밖의 음압병상 :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나. 전실 :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다만, 중환자실인 음압병상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음압용 공급·배출 시설 : 다른 공급·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HEPA 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마.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바.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022. 01.28 관련법 추가 개정
318	168. ~~ ② 음압병상은 1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168. ~~ ② 음압병동을 제외한 그밖의 음압병상은 1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오타 수정
319	168. 다음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관리기관에 설치해야 하는 음압병실의 설치·운영 기준으로 옳바르지 못한 것은? <해설>(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4의2] 음압병실 설치·운영 기준(제31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1. 설치기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상 :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나. 전실 :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168. 다음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관리기관에 설치해야 하는 음압병실의 설치·운영 기준으로 옳바르지 못한 것은? <해설>(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4의2] 음압병실 설치·운영 기준(제31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개정 2022.1.28.> 1. 설치기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상	2022. 01.28 관련법 추가 개정

	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라. 음압용 공급·배출 시설 : 다른 공급·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HEPA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마.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바.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운영기준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다.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1) 음압병동의 음압병상 : 1인실은 10㎡, 다인실은 음압병상마다 6.3㎡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다인실은 음압병상 간 간격이 1.5m 이상이고,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그 밖의 음압병상 :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나. 전실 :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u>다만, 중환자실인 음압병상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u> 라. 음압용 공급·배출 시설 : 다른 공급·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HEPA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마.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바.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운영기준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다.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486	64.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 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한 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치과 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64.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 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치과 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한 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오타 수정
511	10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06. ④	10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06. ①	오타 수정

531	04.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1서울 기출유사) 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②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③ 영양관리 ④ 질병의 조기치료를 위한 조치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	04.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1서울 기출유사) 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②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③ 영양관리 ④ 질병의 조기치료를 위한 조치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2항 : 건강증진사업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오타 수정
762	16. 다음중 「결핵예방법」 상 <u>의료기관에 종사하는</u> 의료인에 대한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바르지 못한 것은?	16. 다음중 「결핵예방법」 상 <u>결핵환자를 검진하는</u> 의료인에 대한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바르지 못한 것은?	오타 수정
779 ~780	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 다음중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① <u>1만분의 1,152</u> ② 1만분의 1,052 ③ 100분의 20 ④ 100분의 10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u>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152로 한다.</u> <개정 2020.12.29.>	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 다음중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① <u>1만분의 1,227</u> ② 1만분의 1,052 ③ 100분의 20 ④ 100분의 10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u>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227로 한다.</u> <개정 2021.12.21.>	2021. 12.21 관련법 추가 개정

896	09. 「연명의료결정법」 상 ~~~~~ 다음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관은? ① 건강생활지원센터 ② 보건소 ③ 보건의료원 ④ 보건진료소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1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09. 「연명의료결정법」 상 ~~~~~ 다음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관은? ① 건강생활지원센터 ② 보건소 ③ 보건의료원 ④ 보건진료소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1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2021. 12.21 관련법 추가 개정
-----	--	---	-----------------------